

## 사업추진 절차 안내

### 접수 및 지급

산지 소재지 지자체 (읍·면·동 접수/시·군·구 지급)

### 지급요건 검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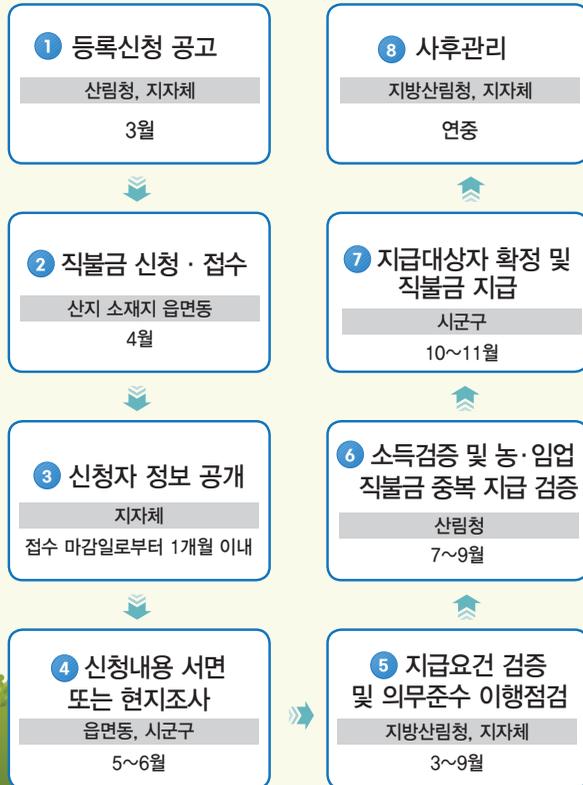
지자체 읍·면·동 및 산림부서

###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

지방산림청(국유림관리소) 및 지자체 산림부서

### 추진 절차

※ 추진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

## 임업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

### 신청 전 주의사항

- 임업경영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변경하기
  - 임업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
  - 산지 소유주 또는 임차 정보(임대차 계약자 또는 기간 등)가 변경된 경우
  - 재배품목, 재배면적(휴경면적)이 변경된 경우
  -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임업인이 변경된 경우
  - 이외에도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.
- 직불금 신청 시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다를 경우 직불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## 지급대상 산지 및 대상자 요건

### 공통요건(임산물생산업·육림업)

-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
-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·군·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등(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업기준을 충족해야 함)
-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,700만원 미만

### 임산물생산업 직불금(소규모임가·면적) 지급요건

- 직전년도 1년 동안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
-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(농업법인 4,500만원) 이상 증빙

### 소규모임가직불금 자격요건

(모두 충족시 임가 중 지급대상자 1인에게 지급)

-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 합이 0.5ha 이하
-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이 1.55ha 미만
-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 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
-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

-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으로 2,000만원 미만
-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으로 4,500만원 미만
-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으로 3,800만원 미만

### 면적직불금 자격요건

- 0.1ha~30ha(농업법인 5~50ha)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종사

### 육림업 직불금 지급요건

- 대상 산지 소유자(또는 입목등기)
- 직전년도 1년 동안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
- 직전년도 10년 내 본인(배우자, 직계존비속 포함)의 조림, 숲가꾸기 등의 육림실적이 있는 3~30ha(농업법인 10~50ha) 산지

### 주업기준

-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·군·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업기준을 충족하여야 함

### 임산물생산업

※ ①~③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주업기준 충족함

-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·군에서 3ha(농업법인 10ha)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
- 임산물 판매액 연간 1,600만원(농업법인 8,000만원) 이상
- 임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투입비 연간 800만원(농업법인 4,000만원) 이상

### 육림업

※ ①, ②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주업기준 충족함

- 주소지(주된 사무소)와 동일한 시·도에서 30ha(농업법인 300ha) 이상 경영(연접한 시·군의 산지 포함)
- 주된 산지 시·군(연접 시·군 포함)에서 100ha 이상 경영 및 해당산지 연 90일 이상 종사하고, 목재판매액 연 1,600만원 이상 이거나 경영투입비 연 800만원 이상(농업법인은 해당사항 없음)

# 임업인 의무준수사항

## 임업인 의무준수사항

-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, 감액 지급됩니다.
  - 이행기간 : 직전 연도 10월 1일부터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
  - 준수사항별 미이행 시 각 10% 감액

구분	임산물생산업	육림업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· 관리</li> <li>- 산불 · 산사태 · 병해충 방지 등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활동 수행</li> <li>- 이웃한 산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 표시 · 관리</li> </ul> </li> <li>• 임업 · 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</li> <li>• 농약, 분뇨, 퇴비, 액비 적정 사용, 비료 보관, 하천수 · 지하수 이용준수</li> <li>•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 · 사육 · 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</li> <li>•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</li> <li>• 산지 및 주변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</li> <li>•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것</li> <li>• 영림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것</li> <li>• 국토환경 · 자연경관 보전,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체 활동*에 참여할 것</li> </ul> *임업 관련 · 협회 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수준 사용</li> <li>• 임산물 생산 · 유통 · 판매 시 유해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준수</li> <li>• 임산물 출하 제한, 폐기, 용도 전환 · 출하 연기 준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해예방을 위해 임도, 진입로, 작업로를 관리할 것</li> <li>- 산림경영계획 인가대로 사업 시행</li> </ul> </li> <li>• 임목본수 일정 수준 이상 유지</li> </ul>
개별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임산물 생산 · 유통 · 판매 시 유해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준수</li> <li>• 임산물 출하 제한, 폐기, 용도 전환 · 출하 연기 준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해예방을 위해 임도, 진입로, 작업로를 관리할 것</li> <li>- 산림경영계획 인가대로 사업 시행</li> </ul> </li> <li>• 임목본수 일정 수준 이상 유지</li> </ul>

## 임업인 교육 수강 방법

### 온라인 교육

- 농업교육포털([www.agriedu.net](http://www.agriedu.net)) 접속 → 「임업직불제 간편로그인」 배너 클릭 → 경영체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 → 수강
- 임업-in([www.foco.go.kr](http://www.foco.go.kr)) 접속하여 수강(4월 오픈 예정)

### 집합 교육

- 지방자치단체, 지방산림청 등의 운영계획에 따라 수강 가능
- ☞ 자세한 사항은 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시 · 군 · 구 또는 지방산림청으로 문의



**임업직불금 등록신청 및 지급 문의는 해당 지자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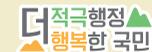
-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
  - 산지 소재지 읍 · 면 · 동사무소

- 임업직불금 지급
  - 산지 소재지 시 · 군 · 구 산림부서



**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은 아래의 접수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접수기관 주소 및 연락처			
주민등록 소재지	접수기관	주소	연락처
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특별자치도 중 춘천시 · 원주시 · 홍천군 · 횡성군 · 철원군 · 화천군 · 양구군 · 인제군	북부 지방 산림청	(우)2646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배울로 124	전화) 033-738-6173~7 팩스) 033-738-6179
강원특별자치도 중 강릉시 · 동해시 · 태백시 · 속초시 · 삼척시 · 영월군 · 평창군 · 정선군 · 고성군 · 양양군	동부 지방 산림청	(우)2547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-14	전화) 033-640-8653~8 팩스) 033-640-8650
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북도 중 경주시 · 김해시 · 밀양시 · 양산시 · 함안군 · 창녕군	남부 지방 산림청	(우)36663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솔밭길 28	전화) 054-850-4102~9 팩스) 054-842-7106
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북도, 충청남도	중부 지방 산림청	(우)32599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토고개길 20	전화) 041-850-5313~22 팩스) 041-850-5304~5
광주광역시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남도 중 진주시 · 통영시 · 사천시 · 거제시 · 의령군 · 고성군 · 남해군 · 하동군 · 산청군 · 함양군 · 거창군 · 함천군, 제주특별자치도	서부 지방 산림청	(우)55710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	전화) 063-620-4655~6 063-620-4645~8 팩스) 063-620-4649



## 임업 · 산림 공익직접지불제란?

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「**임업 ·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**」에 따라 **2022년 10월 1일 시행된 제도**입니다.

### 임업직불금 종류

-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: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
- 육림업 직불금 :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

구분	구간 및 단가	
임산물 생산업 직불금	소규모임가직불금	0.1ha이상 ~ 0.5ha이하 : 임가 당 130만원*
	면적직불금 (일반종목)	1구간(0.1ha이상 ~ 2ha이하) : 94만원/ha
		2구간(2ha초과 ~ 6ha이하) : 82만원/ha
면적직불금 (송이)	1구간(0.1ha이상 ~ 10ha이하) : 62만원/ha	
	2구간(10ha초과 ~ 20ha이하) : 47만원/ha	
육림업 직불금	1구간(3ha이상 ~ 10ha이하) : 62만원/ha	
	2구간(10ha초과 ~ 20ha이하) : 47만원/ha	
	3구간(20ha초과 ~ 30ha이하) : 32만원/ha	

\*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단가 상향을 위한 「임업직불제법」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임  
☞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